

(報告)

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870
------------	-----

'99. 12. 15

1. 제안이유

- 본 규칙의 제정은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도록 현재 제작 활용하고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위상과 항구적인 공신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임.

2. 주요내용을 보면

- 성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에는 목적을
- 동 규칙 제2조 (의회기의 규격)에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색상을
- 동 규칙 제3조 ~ 제5조에는 의회기의 제양과 관리방법 및 의회기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동 규칙 제6조 ~ 제8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규격과 모형을 규정 하고 배지의 교부 및 패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는 성남시의회가 처음 개원된 1991년도부터 제작 활용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제작 시기가 다를 경우 규격,디자인 및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규칙으로 규격과 모형, 색상등을 규정해 놓으므로써 의회의 위상과 항구적인 공신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